

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(안) 예고

「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」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66조의2 및 「예천군의회 회의 규칙」 제19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.

2020. 11. 3

예천군의회 의장



1. 제정이유

- 예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예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가. 홍보대사의 임무(안 제2조)

- 군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,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,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·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, 지역 축제 및 관광·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,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활동

나. 위촉 및 임기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-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 전문가, 유명인 및 단체
- 군의 경제적·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나

단체

- 그 밖에 군정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
-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재위축 가능

다. 예우 및 보상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- 무보수 명예직으로 임무수행 시 의전을 갖춰 예우
- 업무수행 활동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지급

3. 제정조례안

- 붙임과 같음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- 나. 신·구조문대비표 : 해당없음
- 다. 예산조치 : 추후반영
- 라. 규제심사 : 해당없음
- 마. 입법예고결과 :
- 바. 비용추계서 : 해당없음
- 사. 성별영향분석평가 : 해당없음

5. 의견제출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**2020년 11월 8일**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조례안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의견과 그 이유)

제 정(안)	수 정(안)	수 정 사 유

나. 성명(단체일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), 주소, 전화번호

다. 의견제출 방법

- 주 소 : 예천군의회 (우 36826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)
- (☎054- 650- 6407, FAX 054- 650- 6409)
- 전자우편(이메일) : syyh2000@korea.kr

예천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예천군의 효율적인 홍보를 통해 예천군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예천군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임무) 홍보대사의 주요 활동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예천군(이하“군”이라 한다)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국내·외 활동
2. 주요 군정홍보와 이를 위한 홍보물 제작 참여 활동
3. 지역특산물 홍보 등 농업·축산업 경쟁력 강화에 관한 활동
4. 지역 축제 및 관광·문화 등 관광 활성화에 관한 활동
5. 투자유치에 관한 홍보 활동
6. 그 밖에 예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

제3조(위촉 및 임기) ① 홍보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단체 중에서 예천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군수가 위촉한다.

1. 군의 위상을 높이는데 부합되는 각 분야별 전문가, 유명인 및 단체

2. 군의 경제적·문화적 가치 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국내·외 인사나 단체
 3. 그 밖에 군정에 관심이 많고 군정 홍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이나 단체
- ②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재위촉할 수 있다. 다만 단기적인 특정목적을 위한 경우라면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4조(품위유지) ① 홍보대사로 위촉된 사람은 군을 홍보하는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고, 군의 홍보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.

② 홍보대사는 군의 이익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거나, 명예를 훼손해서는 아니 되고,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영리를 추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.

제5조(해촉) 군수는 홍보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.

1. 본인의 사임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
2. 정당한 사유 없이 홍보대사 활동을 기피하는 경우
3. 홍보대사로서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
4. 그 밖에 직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및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

제6조(운영) 홍보대사의 위촉 등 관련업무는 홍보소통담당이 주관하되,

홍보대사 활동은 사업부서에서 홍보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한다.

제7조(예우 및 보상) ①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하며 각종 군정활동 참여 등 홍보대사 임무 수행 시에는 의견을 갖춰 예우를 하여야 한다.
② 홍보대사가 제2조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활동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및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 또한 제2조제2호에 따른 홍보물 제작에 참여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홍보물 제작 출연료를 지급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<참고자료>

관 계 법 령

【지방자치법】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